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8월 2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8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9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 제안이유

-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를 명확히 하여 해당기관 및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의 적용범위를 “시 및 그 소속기관과 시에서 지원하여 운영 하는 모든 단체”에서 “부천시 및 그 소속기관과 시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단체”로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의2)

- 효율적인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제2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5항)
- “사이버 민원실”의 명칭을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함.(안 제8조)
-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사이버 민원실이 전자민원창구로 전환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고객상담 콜센터하고는 관련되는 부분은 없는지?	○ 인터넷 시스템은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사용하는 것으로 콜센터와 관련되는 것은 크게 없으나 인터넷 민원과의 관련여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인터넷을 통한 주민참여가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로 바뀌며는 시 홈페이지만 주민참여를 적용한다는 것인지?	○ 보조단체, 출연단체 등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모두 적용받는 것입니다.
○ 조례에 근거해서 시스템에 대한 통합운영은 어느 부서가 하게 되는지?	○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정보통신과가 주관하고 기타 부분은 해당단체나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25호
의결 년월일	2005. 9. 9 (제121회)

제출년월일 : 2005. 8. 25.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를 명확히 하여 해당기관 및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시 및 그 소속기관과 시에서 지원하여 운영 하는 모든 단체”에서 “부천시 및 그 소속기관과 시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단체”로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의2)
- 나. 효율적인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제2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5항)

다. “사이버 민원실”의 명칭을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함.(안 제8조)

라.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를 “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아이디”라 함은 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사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시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단체에서 설치한 인터넷시스템과 홈페이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의 제목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를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이용자에게”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로 하고, 동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인터넷시스템은”을 “부천시 홈페이지는”으로 하며, 동항 제5호중 “ID”를 “아이디”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를 “인터넷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시스템 운영부서와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홈페이지 운영부서에서는”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를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인터넷시스템”을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인터넷시스템 개선)”을 “(인터넷서비스 개선)”으로 하고, 동조중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서비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인터넷 정보관리)”를 “(홈페이지 정보관리)”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인터넷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에”를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로,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 지정 등 운영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인터넷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를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인터넷 게시자료 관리)”를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 게시자료에”를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로 하며 “인터넷에”를 “홈페이지에”로 하며, 동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의”를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인터넷 자료제공)”을 “(홈페이지 자료제공)”으로 하고,

동조 단서외의 부분중 “시장은”을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사이버 민원실을”를 “전자민원창구를”로, “사이버 민원실에”를 “전자민원창구에”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사이버 민원실은”를 “전자민원창구는”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인터넷을”를 “홈페이지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인터넷 등에”를 ”홈페이지 등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인터넷에”를 “홈페이지에”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사이버 민원실을”를 “전자민원창구를”로 한다.

제4장의 제목중 “인터넷을”를 “홈페이지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인터넷을”를 “홈페이지를”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시민의 사이버 시정참여)”를 “(홈페이지 활성화)”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시민 여론조사를”을 “시민 여론조사, 시민 제안제도 및 홍보행사 등을”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우수시책건의 등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을 “우수시책 공모, 홍보행사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는”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중 “ID”를 “아이디”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동조중 “ID”를 각각 “아이디”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및 제1항중 “ID”를 각각 “아이디”로 하고, 동조 제2항중 “ID”를 “아이디”로, “인터넷”을 “홈페이지”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를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과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인터넷시스
템에”를 “인터넷시스템과 홈페이지에”로 한다.

제19조중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을 “인터넷시스템 및 홈
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접근권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부서
의 장”으로 한다.

제2조제4호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률」”로 하고, 동조 제5호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을 각각 “「민원사무처
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2조제2항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6. (생략)</p> <p><신설></p>	<p><u>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2조(정의) ----- -----.</p> <p>1.~6. (현행과 같음)</p> <p>7. “아이디”라 함은 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u>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사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u></p>
<p>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터넷 시스템을 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및 그 소속기관과 시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모든 단체에 적용되며,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시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단체에서 설치한 인터넷시스템과 홈페이지에 한하여 적용한다.</p>
<p>제2장 <u>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u></p>	<p>제2장 <u>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u></p>
<p>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p>	<p>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p>

<p>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u>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u></p>	<p>----- ----- ----<u>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u> -----.</p>
<p>②<u>인터넷시스템은</u>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p>	<p>②<u>부천시 홈페이지는</u> ----- -----.</p>
<p>1.~4. (생략)</p>	<p>1.~4. (현행과 같음)</p>
<p>5. 전자우편 <u>ID</u> 이용</p>	<p>5. -----<u>아이디</u>---</p>
<p>6.·7. (생략)</p>	<p>6.·7. (현행과 같음)</p>
<p>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u>시장은 인터넷 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u></p>	<p>③----- ----<u>인터넷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시스템 운영부서와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홈페이지 운영부서</u> <u>에서는</u>----- ----- -----.</p>
<p>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u>인터넷 시스템 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u>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④----- ----- ----<u>시스템 운영부서의 장</u>----- ----- ----- ----- -----.</p>
<p>⑤시장은 필요시 제2조의2 규정</p>	<p>⑤-----</p>

<p>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인터넷시스템 구축자료의 공동이용을 추진 할 수 있다.</p>	<p>-----인 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합하 여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p>
<p>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이상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인터넷서비스 개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서비스 --- ----- ----- -----.</p>
<p>제5조(인터넷 정보관리) ①인터넷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p>	<p>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 ----- -----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 지정 등 운영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p>
<p>②인터넷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p>	<p>②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 ----- ----- ----- -----.</p>
<p>제6조(인터넷 게시자료 관리) ①관</p>	<p>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홈</p>

<p>리부서의 장은 인터넷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인터넷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p> <p>②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1.~9. (생략)</p>	<p>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 ----- -----홈페이지에 ----- -----.</p> <p>②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p> <p>1.~9. (현행과 같음)</p>
<p>제7조(인터넷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 ----- ----- ----- -----.</p>
<p>제3장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p>	<p>제3장 ----- 전자민원창구 ----- -----</p>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처리대상 민원은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인터넷 등에 게재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 전자민원창구를
----- 전자민원창구에

② 전자민원창구는 -----

-----.

③ -----

----- 홈페이지를 -----
-----.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 홈페이지 등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p>대상민원을 선정하여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한다.</p> <p>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u>사이버민원실</u>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④ (생략)</p> <p>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u>사이버민원실</u>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해당 공무원으로 민원 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②<u>사이버 민원실</u>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장 <u>인터넷</u>을 통한 주민참여</p> <p>제12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시장은 <u>인터넷</u>을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p>	<p>----- <u>홈페이지</u>에 ----- -----.</p> <p>②----- -----<u>전자민원창구</u>-----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 ----- -----<u>전자민원창구</u>----- ----- -----.</p> <p>②<u>전자민원창구</u>를 ----- ----- -----.</p> <p>제4장 <u>홈페이지</u>를 -----</p> <p>제12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 <u>홈페이지</u>를 ----- -----</p>
---	--

<p>교환을 하기 위하여 시장과의 대화 방을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3조의2(시민의 사이버 시정참여)</p> <p>①시장은 각종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민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p> <p>②각종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 여론 조사, 제안제도, 우수시책건의 등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p> <p>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p> <p>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시장은 행정능률 향상 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 성화하여야 한다.</p> <p>제15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 우편 ID 보급) ①시장은 지역 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p>	<p>-----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의2(홈페이지 활성화)</p> <p>①----- 시민 여론조사, 시민 제안제도 및 홍보행사 등을 -----.</p> <p>②----- ----- 우수시책 공모, 홍보행사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는 ----- -----.</p> <p>제5장 ----- 아이디 -----</p> <p>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 디 보급) ----- -----아이디----- -----.</p> <p>제15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 우편 아이디 보급) ①----- ----- -----.</p>
--	---

<p>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정한다.</p> <p>②시장은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p>	<p>-----아이디----- ----- -----.</p> <p>②-----아이디----- -----홈페이지----- ----- -----.</p>
<p>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p>	<p>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시스템 운영부서의 장과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 -----.</p> <p>②인터넷시스템과 홈페이지에 ----- ----- -----.</p>
<p>제19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9조(비밀번호관리)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접근권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부서의 장----- -----.</p>